

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

서산지청	
담당자	백종훈 근로감독관 041-661-5674
FAX	0503-8803-0724

① 대상: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

- ① '25년(발생일기준)에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,
 - ② '24년도 산재예방실적평가(노력도)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,
 - ③ '24년도 산업재해발생률(사고사망만인율)이 평균 0.5배 이하인 건설업체
- ※ 단, 대형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

② 운영방법

- 자율안전관리제도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통해 서산지청장 승인 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, 안전진단기관 등과 자율안전컨설팅 계약 체결
- 동 기관 소속 전문가(2인1조)가 월 15개소 이하의 컨설팅 실시

<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>

- 120억 이상 1,500억 미만: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(또는 건설안전기술사) 및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
 - 1,500억 이상 3,000억 미만: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(또는 건설안전기술사) 및 경력 3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(산업기사 5년)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
 - 3,000억 이상: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(또는 건설안전기술사)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 기사(산업기사 5년)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
- ※ 외부전문가(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)는 컨설팅 실시일에 기술지도 수행 불가

○ 매월 1회 이상 컨설팅 실시, 매분기 말일까지 점검표 등 제출

- (안전관리) 비계.거푸집.동바리.흙막이 시설 등 가시설물의 구조 및 기술검토, 구조적 안정성 등 중점 기술지도
- (보건관리) MSDS, 근로자 건강진단,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 등
- 자율안전관리 승인 현장에서 제출한 안전조치 개선결과 보고서 검토 후 컨설팅 사업추진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안전관리(컨설팅) 승인 취소하고, 감독 실시
-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승인 취소
-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내용 적정여부 조사 후 본부 보고

③ 세부일정

○ '26. 8. 20.(목)까지 서산지청 산재예방감독과로 신청서 제출

- 직접 제출 및 우편 제출 가능

○ '26. 8월 자율안전관리제도 심사위원회 개최 시 자율안전컨설팅 “신규” 신청 현장 담당자 참석 및 컨설팅 이행 계획 발표(잠정)

* 지방관서장은 계획서 내용과 공사기간, 작업 위험도, 현장의 개선 노력 의지(시스템 비계·동바리 사용 등)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검토

○ 자율안전관리 승인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 감독 유예

- 단, 중대재해 발생, 사망사고 발생 주요 종합건설업체 감독, 불량통보·조치요청 현장 등 일부 제외

고용노동부 서산지청